순천시의회 공고 제2019 - 15호

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

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결산검사 의견서

순천시장 귀하

2019년 4월 22일

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 2018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순천시의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순천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,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의 최종의견으로는 순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·세출결산(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), 기금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공유재산, 물품 및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순천시 결산 검사 위원

대표위원	박 재 원	서명
위 원	박 병 희	서명
위 원	문 운 기	서명
위 원	김 태 호	서명
위 원	문 정 근	서명

2019년 6월 3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의회의장인